Learn to Share. Share to Learn



서울여자대학교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참여연구원 등록 재안내

- 1. 관련 : 연구진흥팀-1958(2022.1.17.) 「학생연구자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참여연구원 등록 안내」
- 2. 상기 공문과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학생연구자 보호를 위한 학생연구자 명단 관리를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. 적용대상
- 1) 관련법

산재보험법 제123조의 2(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) ②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대학·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신분의 연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.

- 2) 대상자 : 「연구실안전법」 상 연구활동종사자
 - 자연과학대학/미래산업융합대학(정보미디어대학 포함)
 - 학부생, 대학원생
 - * 재학생,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, 휴학생, 수료생 포함
- 적용사업 : 교내·외 연구과제
- ※ 정부·민간·위탁·개인 연구과제 등
 - * 학생 본인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 및 학업차원의 실험·실습은 불포함

나. 제출안내

1) 제출서류

구분	<u>연구원 신규등록</u> * 최초 참여연구원 등록	연구원 변경 * 기존 참여연구원의 참여기간 변경 및 연구인력 추가
교내 연구	[온라인 신청]종합정보시스템 연구비시스템>연구과제관리>교내연구과제신청 : 참여인력 정보입력	[온라인 신청] 종합정보시스템 연구비시스템>연구과제관리>연구과제등록 및 변경신청 (교내외구분 : 교내)
교외 연구	[오프라인제출] 연구(보조)원 수당지급의뢰서 * 관련증빙 :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, 재학증명서, 통장사본, 개인정보활용동의서	[온라인 신청] 종합정보시스템 연구비시스템>연구과제관리>연구과제등록 및 변경신청 (교내외구분 : 교외)

※ 교외 연구 :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에 따라 <u>학생연구자도 3책 5공이 적용됨</u>에 따라 <u>최대</u> 5개 국가연구개발사업, 100% 인건비계상률 이내에서 참여가능

- 2) 제출기한 : 전월 15일까지 제출
 - 1차 시행 : 1.2월 참여인력에 등록은 1월 20일까지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담당자에게 제출
 - 3월이후 참여인력은 전월 15일까지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담당자에게 제출함.

(참고사항) 근로복지공단 신고정보

- 1	성명	주민등록번호	학과	학위과정	휴대전화번호

- * 신고서식이 확정되지 않아 변경가능함.
- ※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 관련 학생연구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.

붙임. (교외연구용)연구원 신규등록서류 1부. 끝.

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

미래와 공감하며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대학

수학과장, 화학전공주임, 생명환경공학전공주임, 원예생명조경학과장, 식품공학전공주임, 식품영양학전공주임, 경영학과장, 패션산업학과장, 디지털미디어학과장, 정보보호학과장, 소프트웨어융합학과장, 데이터사이언스학과장, 산업디자인학과장, 컴퓨터학과장, 콘텐츠디자인학과장, 자연과학연구소장, 미래산업융합연구소장

직원 **박연선** 팀장 **정희수** 산학협력단장 **강승석**

협조자

시행 연구진흥팀-1996 (2022.01.20.) 접수 () 우 01797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621 /http://research.swu.ac.kr 전화 02) 970-5808 /팩스 02-970-5910 /이메일 pomme vs@swu.ac.kr / 공개